

# 원기 100년을 향한 재가교역자제도개선방안

김경일 박정원 백인혁 성명종 이상선 장오성 위원: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요약 책임 및 발표 : 박정원 위원

- I. 머리글
- II. 재가 교역자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 III. 문제점 및 검토사항
- IV. 제언

## I. 머리글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출범하여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온 원불교 교단의 운영체제는 지금 한창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가? 교단이 당면하고 있는 교화침체현상의 구조적 제약 요인을 혁파하고 교단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의 지렛대'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모든 사회적 과제의 해답은 문제에서 나온다. 해법이 답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제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교단이 처한 복합적 문제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의 지렛대'를 교단운영체제의 중심축인 출가-재가 교역자제도로 설정하고, 전무출신제도 개선방안 연구(원기90년도 수행과제)에 이어 재가교역자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서의 제도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데 참고할 준거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또한 제도란 개인의 행태를 제약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단의 규칙, 순응절차, 그리고 도덕적·윤리적 행태규범이다. 이처럼 제도란 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된 양식(樣式,pattern)으로서 일단 형성되면 구조적 관성을 갖게 되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제도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개선(또는 개혁)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 개선의 실패 요인으로는 개선내용과 맥락의 불일치, 저항세력의 방해, 주도세력의 노력 부족, 그리고 개선방안 적용의 적시성 등이다.

특히 제도개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상황적 요소들을 확인하여 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배열과 시기별로 추진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도개선과정에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의 정합성, 즉 제도 요소들간의 부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 또는 맥락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라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 II. 재가 교역자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 1. 거진출진제도의 기원 및 시행과정 (불법연구회회규 제156조, 158조)

교단운영과 관련한 「조선불교혁신론」에 담긴 ‘혁신적 의미’는 출가-재가교도가 동등하게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불교 대중화 대요 4항>에서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그 지행의 고하에 따라 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단 구성도 출가교도와 재가교도로 구성하고 출가 재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가 교도 중에서 출가와 같은 수준의 신앙수행 생활 등을 영위하는 교도를 거진출진이라 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하고 있다.

「거진출진자는 공부와 사업에 대한 정도가 전무출신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형편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직접 직무 임명의 책임이 무한자로 함」(157조)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출가, 재가 회원들은 동·하로 훈련시켜 지방 교무로 발령을 하기도 했다. 역대 임원명단에는 재가가 교무로 역할한 것이 나타난다(교고총간 6권 역대 임직원 명부)

이러한 교단 초기의 전통이 출가 교무 위주의 단기훈련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일제 말기 일경이 조선인의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교단규모가 커지고, 전무출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단운영이 출가 교무위주로 점차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교헌에서는 “본교의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를 교역자로 규정하고 교역자는 출가·재가의 남여를 대상으로 양성하여 충당한다”(제9조)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에 관한 내용은 원기 66년 8.13일에 제정된 거진 출진 규정(교규제56호)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격 및 인증에 관한 것만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선발 및 양성,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

따라서 교헌 제19조에 명시된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으로 한다”는 거진출진제도는 오직 재가교도들의 열반후 공부·사업성적 평가를 통한 예우차원의 상징적 의미만 남아 찾아볼 수 있을 뿐 교단 초기 통치조단 규약에 명시된 거진출진제도, 즉 교단운영의 적극적 참여기능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물론 교헌에는 재가 교도의 교정 참여 기회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교단 또는 교당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주로 보좌적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1) 총 9조로 구성된 거진출진규정은 원기66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총 46조로 구성된 전무출신 규정은 원기 53년에 제정된 이후 약 6차례 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현장교화의 주역인 재가 교도들에게 적극적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교당교화를 위한 보조자로서 재가교역자, 즉 원무, 교도회장, 부회장, 순교, 단장, 중앙 등의 역할과 임무가 포괄적으로 부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직무와 역할도 결국은 전법 교화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객체적 존재에게 주어진 역할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교단초기의 거진출진제도를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복원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재가 교도들에게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1> 교단 규정에 나타난 教職의 의미**

전무출신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교헌 제3장 교제 제14조)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전무출신 규정 제2조)
교역자	본교는 출가·재가 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교헌 제3절 교화 제10조)
교무	교무란 전무출신으로서 교무 자격 검정에 합격하여 종법사가 수여하는 소정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각종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교무 자격 규정 제2조)

## 2. 초기 교단사에 나타난 재가회원(거진출진)들의 활동상황

2.1 교단 창립기(원기5년 ~ 9년)에 대종사를 보좌하여 활동한 주요 재가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체는 그 당시 출가자이며 이후에 출가 서원한 선진도 있음)

### ■ 익산총부 건설시대

#### ■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원기9년3월)

-서중안, 송만경, 이청춘, 이춘풍, 문정규, 박원석, 전음광

#### ■ 창립총회(원기9년4월29일 보광사) - 대종사(총재)

영광지방대표=김기천, 김광선(서기), 오창건, 이동안, 이준경

김제지방대표=서중안(회장), 송만경, 김두환, 이일근, 구남수,

익산지방대표=박원석

전주지방대표=문정규, 전음광, 임동악

#### ■ 원기9년 8월에 총부건설기지 확정(익산 신용리)

9월에 건설공사 착수

11월에 초가2동 17간 완공후 불법연구회 간판걸다.

#### ■ 제1회 기념총회(원13년3월26일)

- 회원: 남176명, 여262명(총438명)
- 전무출신: 송규, 이재철, 김기천, 김광선, 오창건, 박세철, 이동안, 이준경  
송도성, 전음광, 송만경, 문정규, 김남천, 송적벽, 조갑종, 이원화 등
- 익산총부, 영광지부, 신흥출장소, 부안수양소(봉래정사), 경성출장소
- 2대회장 - 조송광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교단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출가와 재가가 함께 불법연구회의 회상 발전의 토대를 닦아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 교단 초기 재가 회원 여성들의 활동

교단 초기에 재가회원인 여성들은 주로 소태산 시봉과 식사, 의복 수발, 돈과 토지의 회사, 총부의 살림 등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순교에 열성을 다하여 교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교단 초기 신앙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교단 초기 이를 재가 여성들의 역할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새부처님 대종사에 대한 신심과 시봉의 역할.

교단 최초의 여성활동은 대종사의 구도행각을 믿고 도운 모친 유정천, 대종사 구도시 시봉한 이원화(1884-1964)와 부인 양하운(1890-1973)으로부터 시원을 삼을 수 있다.

\*최초의 여성제자인 이원화가 참여하는 시기는 원기 전4년으로 입정 전후의 대종사를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1919(원기4)년부터 대종사 봉래산에 들어가 교리초안시 김혜월, 장적조등이 시봉하였고, 이청풍, 이만갑(1879-1960), 구남수(1870-1939), 이대련화, 김동순, 강일생화, 김정각 등이 조력했다. 흄치교 신자였던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세 여인은 4,50 대의 몸으로 변산까지 백리의 먼길을 내왕하며 대종사께 신성을 바쳤다. 대종사는 그들을 기특히 여겨 “똥이라도 먹으라면 먹겠느냐”하니 세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온 일화는 유명하다.

이만갑(1879-1960)은 슬하에 10남매를 두고 가세는 비교적 넉넉하였으며, 불교와 흄치교 신앙에 독실하였으나 금산사에서 소태산을 처음 뵙고 제자가 되었다. 월명암에 거주하던 소태산을 산 아래 마을 실상사 옆의 가옥을 매입하여 거주하게 하고 석두암을 지을 때 식량과 멜감 일체를 부담하였다. 이런 그의 공덕을 기려 소태산은 일갑만 받아도 썩 좋은 평점인데 만갑으로 불렸던 것이다. 만갑이란 이름과 더불어 칠보 중에서 가장 고귀한 구슬이라는 뜻의 ‘북방세계 칠중옥’이라는 호를 내렸다. 칠보에다 ‘북방세계’란 말을 단 것은 이만갑이 장적조를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장차 북방 교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을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정산의 지도로 대종사 문하에 출입하게 된 비단장수 최도화는 전주나 남원 등지

로 행상을 나올땐 반드시 대종사께서 드실 것을 짊어지고 심산궁곡에 비바람 무릅쓰고 와서 공양을 올렸다. 또한, 대종사가 공사로 인해 사가를 돌보지 못하자 양하운 사모댁을 임실 자기 집으로 옮겨 살게 하였고, 익산에 총부를 정하게 되자 이리 송만리로 이사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2) 초기 교단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육체적·물질적 후원자

### -영산 저축조합에서의 협력자-

이들 여성들은 초기 공동체에서 식사와 의복수발, 돈과 토지 및 가옥의 회사, 살림살기 등의 경제적 지원과 뒷바라지를 맡았다. 육체적 봉사와 재정적 지원, 가재도구 마련 등 신앙공동체의 생활터전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일에 적극 참여했다. 근검 저축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던 시미모으기 운동은 거의 여성들이 담당했다. 방언공사에서 남자들이 훠침을 지고 구간도실에 모여 공부를 할 때 여성들은 밥을하고 방언공사의 뒷바라지를 했을것이지만 밥짓기와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평가가 없어 교사에서 여성들의 이런 노력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때 여성들이 참여한 일의 성격은 가사노동과 공동체를 위한 출역이 주를 이루었다.

이원화는 대종사 대각후 방언공사와 영산교당 건축시에도 직접 내부의 주인이되어 노고를 다하였고 초기 교단의 중요활동에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9인 남성제자와 함께 여성활동의 역사를 창조하였다. 여성의 당연한 일로 여겼던 집안 허드렛일과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교단 창립기에 활동했으며, 대종사 대각의 전후를 목격한 최초의 증인으로 양하운과 더불어 초기 운동과정에서 전파활동을 담당하였다.

### -총부 공동생활의 후원-

초창기 총부는 남자 위주의 출가 공동체 생활이었다. 그후 여자 회원들이 모여들어 선을 나고 박사시화가 서울에서 자기 세간을 가져오고 전음광의 부인이 살림을 맡게 되면서 총부살림은 훨씬 나아졌다.

원기 8년 대종사가 총부 기지물색을 할때에는 이청춘 최도화가 다른 제자들과 임시출장소를 설치하는데 협력했고, 총부회관을 건설할때는 이청춘 이동진화 이공주 전삼삼 최도화 장적조 외 다수가 특별후원자가 되었다.

특히 이청춘(1886-1955)<sup>2)</sup>은 원기 10년 그동안 근검 저축하였던 전재산 70두락의 토지를 입회기념으로 회사하여 창립 도상의 간고한 총부 유지 대책의 기초를 공고하게 다져주었다. 이듬해에는 모친과 함께 총부 구내로 이사함과 동시에 전무출신을 서원하였다.

2) 기생 소설 출신으로 명랑하고 언변에 능하며 실천력이 강한 불법연구회 제1대 1회내 특등유공인이다. 원기8년 비단장수 최도화의 인도로 전주에서 소태산을 뵙고 제자가 되어 청춘이란 새이름을 받았으며 여자전무출신제도를 제안하였다.

## -각 지부 토지 및 건물회사-

이동진화(1894-1968)는 원기 11년 창신동 605번지 116평 십여간의 건물을 회사하여 이곳에서 서울 교화가 태동되었다. 그 후 출가를 단행하였고, 불교신자였던 민자연화(1859-1932)는 서울교당 창립에 공헌하였다.

이만갑은 기미년 방언공사 뒤에도 간척답에 보수비가 들어갈 때 구남수와 합력하여 12두락의 대금이 되는 경비를 회사하였고, 원기 10년 최초로 원평지역 법회를 큰아들 집에서 열도록 주선하고 넷째아들 김정종을 전무출신토록 권장했다.

### (3) 창립 인연들을 만나게 해준 활발한 교화활동가

동학사 화엄사 등의 화주였던 최도화(1883-1954)는 임실출생으로 부유하게 자라 결혼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다. 전주를 거쳐 진안 만덕산에 이른 정산종사는 미륵암 화주로 있던 최도화를 만난다. 그로 인해 뒷날 교단의 여성으로 활약하는 박사시화, 이동진화, 이공주 등을 만나는 기연이 된다. 원기 9년 최도화의 안내로 박사시화, 박공명선, 성성원, 이동진화 김삼매화 등 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10여명의 여성제자들을 만나는 대종사의 경성행가가 이루어진다.

‘전북 회상과 서울 회상의 총연원’이라는 칭호에 맞게 화려한 순교활동을 전개했던 최도화는 창립인연을 찾고 각지에 교당을 설립하고 319명의 입교 연원을 달아 회상 창립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종사가 정산종사를 만덕산에 보내 최도화를 만나게 한 것은 최도화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회상 창립이 구체화되고 동서남북으로 활발하게 교화가 전개되었다. 전주에서 최도화와 박사시화의 만남을 통하여 서울 교화와 남원 교화가 발전되었으며, 전삼삼을 통하여 진안 교화를, 김만공월을 통하여 관촌 교화를 싹틔웠으며, 이청춘을 통해 전주교화가 활발해졌다. 박사시화 전삼삼 김만공월 이청춘은 모두 최도화의 연원으로 입교하였다. 최도화의 공식 직명은 ‘행상순교’이다. 비단 방물 등을 이고 다니며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만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이생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교강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 초기 교화는 이렇게 주변의 인연들과 세정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이뤄졌다. 행상을 통해 경제력을 확대해 자력을 세워갔으며, 이웃을 위해서는 회관을 세워 그들을 깨우치고 우수한 여성들에게 선비를 마련해 주어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었다.

박사시화(1867-1946)는 제1대 성업봉찬대회때 무려 575명의 인연을 인도하여 최다연원자로 표창을 받았다. 창립초기 대종사와 불법연구회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기에 그런 역할을 한 것은 깊은 신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후일 출가전 무출신하였다.

장적조(1878-1960)는 경남 통영 출생으로 부유한 집에서 자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가정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방물장수로 돌아다니다가 이만갑의 지도로

내변산에서 소태산을 뵙고 귀의하여 정성을 다 바쳐 순교에 힘썼다. 생불 만난 신바람으로 어느곳이든 아니 다닌 곳 없이 순교하며 다녔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시작하여 북만주의 목단강 등 최초의 북방 교화의 개척자가 되었다. 또한 뒷날 경남 일대의 인연을 찾는 길잡이가 되었다. 원평 경성 대구 부산 마산으로 돌아다니며 포교를 많이 했으며 특히 부산인연을 모으는데 온힘을 기울여 부산 당리교당을 창설하는데 주역을 담당한 부산지방 교화의 시조라고 할수 있다.

#### (4) 후일 여성전무출신 출현의 모태

이들 여성들은 상부나 이혼등의 경험을 한 여성들로 교직없는 교역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이들의 인연으로 많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여자전무출신<sup>3)</sup>이 되었다. 이들은 공동체 전영역에 걸친 활약으로 다음 세대의 젊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공부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최도화는 조전권에게 선비를 마련해주어 동선을 나게 해주어 최초의 정녀 무녀리를 탄생시키는 등 많은 재가 여성들이 후일 여성전무출신을 배출시키는 모태로 역할하였다.

이청춘은 여자전무출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종사와 대중에게 ‘여자전무출신 제도의 수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여성들의 출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이미 재가회원으로서 교단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여성들 스스로 발심하여 후일에 전무출신이 되었을때 이들의 과거의 경험과 역량은 홀륭한 출가자의 소임을 다하는데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 3. 법문에 나타난 거진출진제도

법문을 통해 교단운영과 관련하여 거진출진이 차지하는 제도적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특히 원기 58-61년 사이의 대산 종사 법문에서는 거진출진에 관한 법문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에 주요 법문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가나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차별 세우는 법을 주로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지마는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나 그 쓰는 법이 편벽되면 일반 대중을 고루 화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3) 회상 창립 이전에 회중일에 수고한 사람을 창건사에서는 ‘전무노력자’ ‘전무주력자’라 하였고 돈이나 물질 등 간접적으로 도와준 사람을 ‘후원자’라 하였다. 원기 9년 회상창립 뒤에 영광 등지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집을 나와 회중사에 전무하는 사람을 ‘전무출신자’라 했다. 1회 기념총회 이전 자료에 의하면 회원은 출가회원 재가회원으로 구분하고, 공부면에서 청할때는 ‘공부인’ 또는 ‘연구인’이라 하였고 사무에 종사하는 회원은 ‘사무인’이라 함. 전무출신이란 용어는 월말통신 창간호(원기 13년)의 ‘전무출신 실행단의 조직’으로 소개된다. 이 명칭은 출가 재가 회원의 성분을 구분한 것으로 전무출신 실행단, 전무출신 기성단, 거진출진단, 보통단 4단 이었다. 전무출신 실행단은 현재 출가하여 회중사업에 전무하는 회원이요, 기성단은 장차 출가하여 전무출신을 하기로 기약한 회원이며, 재가이나 공부와 사업정도에 있어 출가회원에 차이가 없는 회원을 거진출진단이라 하였고 보통단은 일반 재가회원들을 말한다. ‘교무’직은 원기 10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선원 및 지부 출장소 담당자에 대한 호칭을 말한다. 일례로 경성교무 제4대 교무로는 재가회원 이공주가 15년부터 17년까지 담당하였는데, 교무직은 재가 출가 구분없는 하나의 직명이었기 때문이다.

회상에는 출가 재가와 남녀 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다 여래로 받들 것이요, 생일이나 열반 기념일이나 기타 모든 행사에도 어느 개인을 본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회상을 창립한 사람이면 다 같이 한 날에 즐겨할 일은 즐겨하고 슬퍼할 일은 슬퍼하게 하여야 하리라.] <대종경 부촉품 17장>

▣ [출가 교도는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전무출신하였다는 정신을 서로 챙기고 재가 교도는 재욕 무욕(在慾無慾)하는 거진출진 정신을 서로 챙겨서 교도한 사람 한 사람이 교중 전체면을 지켜 나가기에 다같이 노력하라.] <대종경 선외록 유시계후장 28절>

▣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출신 도중에 환속한 동지들을 알뜰히 챙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속에 살더라도 항상 본원을 반조하여 철저한 거진출진 생활을 하며, 본인이 재출발을 못할 형편이면 자녀라도 권면하여 공도를 받들게 하여, 법계에 큰 빚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고, 그 분들의 친목 수양 단체로 모원회(慕源會)를 조직하라 하시니라.] <경륜편 30장>

#### ▣ 대산 종사 법문

##### [갑종 전무출신, 거진출진 자격]

1. 우리 스승님 외에 더 높은 스승이 없고 법동지 외에 더 좋은 동지가 없으며
2. 이 법 위에 더 크고 바른 법이 없으며
3. 이 일 이외에 더 즐거운 일이 없으며
4. 어떠한 세상에 가더라도 물들지 않으며
5. 내 하루 동작이 이 공부 이 사업하는 일 뿐이니 전생령과 전인류가 내 몸이 되고 내 가족이 되며, 내 동지가 되고, 내 민족이 되어서 하나 하나가 전인류와 일체생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생애. <대산종법사법문집 제 1집, 수신강요2, 20. 마음의 표준>

▣ 우리 교단에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巨塵出塵)의 이종교도(二種敎徒)가 있으니 그 가운데에도 이 세 가지 무기를 얻은 사람이라야 갑종교도(甲種敎徒)가 되는 것입니다. 전무출신을 하되 법(法)을 위하여는 몸을 잊고 공(公)을 위하여서는 사(私)를 놓아서 위법망구(爲法忘軀)하고 위공망사(爲公忘私)하여 일생을 오로지 바칠 뿐이요, 마음에 바램이 있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함이 있다면 그는 갑종 전무출신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무출신은 오직 성불제중 제생의세(成佛濟衆齋生醫世)의 대서원뿐으로 사량계교(思量計較)가 없고 여한(餘恨)이 없는 일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진출진도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에만 정성이 있지 않고 세계사업을 같이하며 오욕 경계 속에서 살아도 거기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으며 오직 공과 사를 병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갑종 거진출진(甲種居塵出塵)입니다. 우리는 기왕 대종사님의 크신 뜻을 받드는 재가출가(在家出家)의 법자(法子)가 되었으니 이 세 가지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는 수행(修行)과 적공을 계속하여 영생(永生)을 통해서 나도 제도하고 육도사생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대불과 결실(大佛果結實)로써 출가재가간(出家在家間) 대도인(大道人)이 되고 출격장부(出格丈夫)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산 종법사 법문집 제2집, 제7부 교역자 결제 해제 법문. 원기 58년〉

■ 거진출진단(居塵出塵團)을 발족케 하시고 그 취지를 말씀하시기를 『첫째, 복은 그 종자를 뿌리고 가꾸어야 거둘 수 있고 혜(慧)는 마음을 닦아야 밝아지며, 법위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行)하여야 향상되며, 주인은 주인된 역할을 하여야 주인이 된다.

둘째, 사람은 법으로 길들여 훈련을 시켜야 기질이 변화되어 중생이 부처로 변하여지는 것이다.

셋째, 한 솔에 넣어 찌면 같이 익어지고, 같이 공부하면 사반공배(事半功倍)로 향상이 된다.』 <대산종법사법문집 제3집, 제 6편, 공도, 2. 거진출진단발족의 의의>

■ 좌산종법사 법문 : 재가교도를 ‘현장 교화의 주역으로’

1. 현장 교화를 크게 살리자는 것
2. 재가교도를 주인 되게 하자는 것
3. 재가들의 교화역량을 길러 주자는 것
4. 재가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자는 것
5. 재가 모두를 교화자로 만들자는 것
6. 출가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교화공백을 없애자는 것
7. 재가들이 경영하는 일터마다 교화장화 하자는 것
8. 재가들의 직장마다 교화장화 하자는 것
9. 재가들이 사는 마을마다 교화장화 하자는 것
10. 재가들 가정마다 교당화 하자는 것

드디어 재가 출가가 따로 없어서 전체 교도가 교화자가 되고 집례자가 되어, 교도가 가는 곳마다 법석이 열리고 법은이 무르익게 하자는 것이다.

■ 좌산 종법사 법문 : ‘교도 교화의식 제고 방안’에서 9. 재가들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성적화 하고 자격을 심사하여 교역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10. 현장교화의 주역은 재가가 되게 하며 출가들은 오히려 코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III. 문제점 및 검토사항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는 도입-확산-안정기를 거치면서 정착되어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적 맥락이 바뀜에 따라 제도 구성요소간에 모순과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교단초기에는 전무출신

(=출가교역자)과 거진출진(=재가교역자)이 두 축이 되어 교단운영을 원활히 하여 왔으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그 그 맥이 끊기고 제도적 정체성(正體性)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재가교역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다시 검토해야 할 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재가교역자‘에 대한 규정문제이다

원불교 교헌 第9條 教役者란에서 ‘본교는 出家·在家의 男女 教役者를 養成하여 教化와 事業을 擔當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출가교역자는 6년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화와 사업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으나 재가교역자는 단지 교무의 제청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가 교도 중에서 적당히 선별 제청하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임명된다. 따로 마련한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재가교역자의 정의(교규 제 110호)에서 살펴보면 ‘재가교도로서 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재가교역자의 종류로는‘재가교도로서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종별을 둔다.’라고 되어있다.

교헌 제 19조에서‘거진출진은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 전부이다.

둘째, 거진출진의 선발, 교육·훈련, 처우에 관한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세째, 교단 초기 출가-재가가 교단운영에 함께 참여했던 기능적 보완의 대원칙을 변화된 교단내외의 환경속에서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 IV. 제언

모든 정책이나 제도 개선은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시책의 개선은 목적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기와 여건이 적합하여 관련자들이 수긍할 수어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기 선택도 중요하다. 중장기적 계획하에 치밀한 단기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제도개선에는 새로운 관행이나 규칙, 기술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들이 확산되고 정당화되는 제도화과정은 고정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 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시간적 동태성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침체된 교화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행 전무출신제도의 재검토와 거진출진 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개교 100년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무출신 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조정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제언1. 재가교역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규의 보완 및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회상 전법 사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법문에 바탕한

확고한 삶의 자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 제정을 필요로 하는 '거진출진' 및 '재가교역자' 관련 제 규정

거진출진규정(교규 제 56호로 원기 66년 8월 13일 제정됨)

거진출진규정시행규칙

거진출진인사임면규정

거진출진 교육규정

거진출진 처우규정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교규 제 110호, 원기69년제정후 원기80년4월30일 개정됨)

재가교역자 교육에 관한 규칙

재가교역자지원자심사규칙

재가교역자급여 및 후생헌금시행에 관한 규칙

재가교역자 후원공단 규칙

재가교역자 휴무에 관한 규칙 등

#### ※ 거진출진 규정 개정(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18조에 의거하여 거진출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거진출진이란 재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신) 거진출진의 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스승님 외에 더 높은 스승이 없고 법동지 외에 더 좋은 동지가 없으며
2. 이 법 위에 더 크고 바른 법이 없으며
3. 이 일 이외에 더 즐거운 일이 없으며
4. 어떠한 세상에 가더라도 물들지 않으며
5. 내 하루 동작이 이 공부 이 사업하는 일 뿐이니 전생령과 전인류가 내 몸이 되고 내 가족이 되며, 내 동지가 되고, 내 민족이 되어서 하나 하나가 전인류와 일체생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생애.

제4조(자격) 거진출진의 자격은 재가교도로서 거진출진에 지원한 교도를 해당 기관장 또는 주임교무가 추천하여 교단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교육과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조(역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전무출신과 합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원불교의 교법을 전하고, 깨우쳐 주며,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선도자가 된다.

제6조(승인) 거진출진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거진출진 서원서를 종법사에게 제출하여 수위단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7조(임면) 거진출진 인사임면은 해당 기관장 및 주임교무의 의견을 들어 소관

회의를 거쳐 종법사가 임면한다.

제8조(훈련) 거진출진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구교당에서 년 1주일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훈련과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조(등급) 거진출진은 본교의 원성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대우) 예전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장례의 절차를 행하며 영모전에 봉안하고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제11조(포상) 거진출진으로서 공부, 사업간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소관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하며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한다

제12조(징벌) 거진출진으로서 본교의 정신에 탈선적 행동이 있거나 사회에 드러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소관회의의 심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언 2. 재가교역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 ■ 교육목표는?

- 일원상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종교적 품성을 기른다.
- 교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화역량을 배양한다.
- 공중을 위해 헌신하는 봉공자세를 확립한다.
- 교화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실습한다.

### ■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재가교도 중에서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자격규정 제정)

### ■ 누가 교육을 담당 할 것인가?

현 예비교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주로 하되 교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무출신 및 재가교역자 중에서 겸임교수로 채용한다.

### ■ 어디서 교육을 담당 할 것인가?

예비교육 기관에서 하되 일정기간만 출석수업으로 하고 그 외는 권역별로 출장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한다.

### ■ 교육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다학기제로 운영하며 실습학점을 포함하여 총100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 ■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종사님 당대에 실시하였던 동하선내용을 주로 하되 정기훈련 11과목을 비롯하여 4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며 교당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습과목을 두어 구체적인 안으로 정착해 간다.

### ■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정기실습은 30학점 30시간으로 한다.)

### ■ 교육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